

2020) 블랙박스 필기 2차 정오표 [2020.5.20.]

- 건축(산업)기사(하) 2 건축법규 -

페이지	항 목	오	정																															
73	핵심7 예제1번 지문	① 층수가 3층인 건축물	① 층수가 2층인 건축물																															
76	핵심20 예제7번 지문	①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7	핵심21 핵심 박스 내용	<b>2. 회전문의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이격</li> <li>회전문과 문틀 사이 간격 등, 문과 문틀 5cm 이상, 문과 바닥 3cm 이상 이격</li> <li>회전문 길이 140cm 이상</li> <li>회전문 속도 : 분당 회전수 8회 이하</li> </ul>	<b>2. 회전문의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이격</li> <li>회전문과 문틀 사이 간격 등, 문과 문틀 5cm 이상, 문과 바닥 3cm 이하 이격</li> <li>회전문 길이 140cm 이상</li> <li>회전문 속도 : 분당 회전수 8회 이하</li> </ul>																															
79	핵심23 핵심 박스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규모</th> <th colspan="2">구획기준</th> </tr> </thead> <tbody> <tr> <td>① 10층 이하의 층</td> <td>바닥면적1,000m<sup>2</sup> (3,000m<sup>2</sup>) 이내마다 구획</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li> <li>(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임</li> </ul> </td> </tr> <tr> <td rowspan="2">② 11층 이상의 층</td> <td>바닥면적 500m<sup>2</sup> (1,500m<sup>2</sup>)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td> </tr> <tr> <td>바닥면적 200m<sup>2</sup> (600m<sup>2</sup>)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td> </tr> <tr> <td>③ 3층 이상의 층</td> <td colspan="2">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td> </tr> <tr> <td>④ 지하층</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규모	구획기준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1,000m <sup>2</sup> (3,000m <sup>2</sup> ) 이내마다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li> <li>(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임</li> </ul>	②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500m <sup>2</sup> (1,5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바닥면적 200m <sup>2</sup> (6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③ 3층 이상의 층	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		④ 지하층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규모</th> <th colspan="2">구획기준</th> </tr> </thead> <tbody> <tr> <td>① 10층 이하의 층</td> <td>바닥면적1,000m<sup>2</sup> (3,000m<sup>2</sup>) 이내마다 구획</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li> <li>(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임</li> </ul> </td> </tr> <tr> <td rowspan="2">② 11층 이상의 층</td> <td>바닥면적 500m<sup>2</sup> (1,500m<sup>2</sup>)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td> </tr> <tr> <td>바닥면적 200m<sup>2</sup> (600m<sup>2</sup>)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td> </tr> <tr> <td>③ 지상층</td> <td colspan="2" rowspan="2">층마다 구획할 것</td> </tr> <tr> <td>④ 지하층</td> </tr> <tr> <td colspan="3">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규모	구획기준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1,000m <sup>2</sup> (3,000m <sup>2</sup> ) 이내마다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li> <li>(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임</li> </ul>	②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500m <sup>2</sup> (1,5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바닥면적 200m <sup>2</sup> (6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③ 지상층	층마다 구획할 것		④ 지하층	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건축물의 규모	구획기준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1,000m <sup>2</sup> (3,000m <sup>2</sup> ) 이내마다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li> <li>(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임</li> </ul>																																
②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500m <sup>2</sup> (1,5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바닥면적 200m <sup>2</sup> (6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③ 3층 이상의 층	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																																	
④ 지하층																																		
건축물의 규모	구획기준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1,000m <sup>2</sup> (3,000m <sup>2</sup> ) 이내마다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li> <li>(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임</li> </ul>																																
②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500m <sup>2</sup> (1,5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바닥면적 200m <sup>2</sup> (600m <sup>2</sup> ) 이내마다 내화 구조벽으로 구획																																	
③ 지상층	층마다 구획할 것																																	
④ 지하층																																		
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핵심23 예제2번 지문	③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③ <u>지상층과</u>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페이지	항 목	오	정								
91	핵심34 정답	정답: 1 ① 2 ① 3 ①	정답: 1 ③ 2 ① 3 ①								
95	핵심38 핵심 박스 내용	<p><b>1. 노외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b></p> <hr/> <p>1. 육교 및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부분</p> <hr/> <p>2. 종단구배 10%를 초과하는 도로</p> <hr/> <p>3.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시설,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p> <hr/> <p>4. 폭 4m 미만의 도로 (예외: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폭10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 금지)</p>	<p><b>1. 노외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b></p> <hr/> <p>1. 육교 및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부분</p> <hr/> <p>2. 종단구배 10%를 초과하는 도로</p> <hr/> <p>3.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시설,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p> <hr/> <p>4. 폭 4m 미만의 도로 (예외: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b>폭6m 미만</b>의 도로에는 설치 금지)</p>								
102	핵심44 핵심 박스 내용	<p><b>3. 공공시설</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공공용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li> </ul> </td> </tr> <tr> <td>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 공동묘지</li> </ul> </td> </tr> </table>	공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li> </ul>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 공동묘지</li> </ul>	<p><b>3. 공공시설</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공공용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li> </ul> </td> </tr> <tr> <td>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차장, 저수지</b></li> </ul> </td> </tr> </table>	공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li> </ul>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차장, 저수지</b></li> </ul>
공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li> </ul>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 공동묘지</li> </ul>										
공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li> </ul>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차장, 저수지</b></li> </ul>										

2020) 블랙박스 필기 1차 정오표 [2020.5.4.]

- 건축(산업)기사(상) 1 건축계획 -

페이지	항 목	오	정		
41	핵심번호 41	1. 호텔의 기능		1. 호텔의 기능	
		기능	소요실명	기능	소요실명
		관리 부분 (managing part)	프런트 오피스, 클로크룸, 지배인실, 사무실, 공작실, 창고, 복도, 변소, 전화 교환실	관리 부분 (managing part)	프런트 오피스, 클로크룸, 지배인실, 사무실, 공작실, 창고, 복도, 변소, 전화 교환실
		숙박 부분 (lodging part)	객실, 보이실, 메이드실, 린넨실, 트렁크룸, 현관·홀, 로비, 라운지, 식당, 연회장, 오락실, 바	숙박 부분 (lodging part)	객실, 보이실, 메이드실, 린넨실, 트렁크룸, 현관·홀, 로비, 라운지, 식당, 연회장, 오락실, 바(아래로 이동)
		공용(사교) 부분 (public space)	다방, 무도장, 그릴, 담화실, 독서실, 진열장, 이·미용실,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공용(사교) 부분 (public space)	다방, 무도장, 그릴, 담화실, 독서실, 진열장, 이·미용실,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현관·홀, 로비, 라운지, 식당, 연회장, 오락실, 바
		요리 관계 부분	배선실, 부엌, 식기실, 창고, 냉장고	요리 관계 부분	배선실, 부엌, 식기실, 창고, 냉장고
		설비관계 부분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세탁실, 창고	설비관계 부분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세탁실, 창고
		대실	상점, 창고, 대사무소, 클럽실	대실	상점, 창고, 대사무소, 클럽실

